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1. 6. 11.(금)

검 토 안 건	발 의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광현)

검 토 보 고 서

(보고자 : 전문위원 조광현)

1. 검토안건

- 안건명 :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21. 5. 21.
- 회부일 : 2021. 5. 24. (의안번호 : 21-56)

3. 제출이유

보육의 공공성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 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확보하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구립 삼성푸른숲 어린이집 및 구립 삼성해뜰 어린이집 운영사무
- 나.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구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다.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위탁시설 현황

구 분	위 탁 대 상 시 설	
시설명	구립 삼성푸른숲 어린이집	구립 삼성해뜰어린이집
소재지	마포대로11길 50 공덕삼래미안4차@ 409동 1층	마포대로 173-15 공덕삼래미안5차@ 관리동
규모(m ²)	172.27	277.39
예정 정원 (명)	36	60
확충유형	기존 -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전환 - 10년 무상임대	
위치도		

라. 민간위탁기간 : 개월일로부터 5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바. 소요예산 : 360백만원(국비 105, 시비 201, 구비 54)

사. 추진일정

- 1) 2021. 6. : 제2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삼성해뜰어린이집 상정)
※ 삼성푸른숲어린이집 : 제1차 서울시 확충심의 완료 (2021.3.)
- 2) 2021. 6. : 구의회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 3) 2021. 8. : 구립어린이집 신규(전환) 위탁 방침 수립
- 4) 2021. 8. : 어린이집 무상임차 계약체결(구 ↔ 입주자대표회의)
- 5) 2021. 8.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매
- 6) 2021. 9.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7) 2021. 9. :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체결
- 8) 2021.10.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 2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조례 제20조 ~ 제22조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 위탁운영 시설은 공동주택 관리동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아현동에 위치한 공덕삼성래미안 4차 아파트에 “구립 삼성푸른숲 어린이집”을, 공덕삼성래미안 5차 아파트에 “구립 삼성해뜰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시설의 무상임대기간은 10년이며, 민간위탁기간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기존운영자에게 최소운영권 보장 기간인 5년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총 360백만으로 재원별로는 국배 105 백만원, 시비 201백만원, 구비 54 백만원이 투입되며, 위탁범위는 구립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로 「영유아보육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조례」 등 관련법령에도 부합하는 사항입니다.
- 2021년 2월말 현재 우리구 관내 영·유아수는 13,990 명이고 어린이집 수는 총 206개소에 정원 9,108명이며, 이중 구립 어린이집은 78개소에 정원 4,683으로, 구립 어린이 집 비율은 정원을 기준으로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수는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최근 5년간 28개소가 늘어 연 평균 6개소가 증가 되었습니다. (표1), (표2)
- 한편 마포구의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78개소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71개소 보다 다소 높고 국공립어린이 집 수는 38.2%로 6번째 이며, 공교육 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이용률은 52.9%로 3번째에 해당되어 공보육여 건은 양호한 편입니다.(표3)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이는 OECD 평균 1.63명에 크게 못 미치고 우리나라와 인구 규모가 비슷하면서 초저출산 상태에 있는 스페인 1.26명, 이탈리아 1.29명 보다도 뒤진 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육아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비록 한정된 재원과 예산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1. 마포구 어린이집 수급 현황
- 2. 마포구 연도별 영유아 인구수 및 어린이 집 현황
 - 3. 자치구별 국공립 어린이 집 현황
 - 4. 관계법령

[표1] 마포구 어린이집 수급현황

□ 어린이집 수급 현황

(2021. 2. 기준, 단위: 명, %)

영·유아수 (A)	어린이집 총괄			구립어린이집				비 고
	정 원 (B)	현 원 (C)	정원 충족률 (C/B)	정 원 (D)	현 원 (E)	정원 충족률 (E/D)	구립 이용률 (E/C)	
13,990	9,108	7,358	80.7	4,683	3,896	83.1	52.9	- 구립정원충족률은 전국 평균(81.4%) 보다 높고 서울시 평균(83.1%)과 동일 - 구립이용률은 전국 평균(20.4%) 및 서울시 평균(44%)보다 높음

※ 영·유아수 : 영아 (만0~2세), 유아 (만3~5세)

[표2] 마포구 연도별 영유아 인구수 , 및 어린이 집 현황

□ 연도별 영유아 인구수 및 어린이집 현황

(2021. 2. 기준, 단위 : 개소수, 명)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현황('17년 대비)	
영유아인구수	18,219	17,240 (△979)	16,215 (△1,025)	15,256 (△959)	13,990 (△1,266)	△4,229 (△23.2%)	
총 계	233	215 (△18)	214 (△1)	212 (△2)	206 (△6)	△26 (△11%)	
유형별 현황	구 립	50	62 (12)	68 (6)	71 (3)	78 (7)	28 (56%)
	법인·단체	11	6 (△5)	5 (1)	5 (0)	4 (1)	△7 (△63.6%)
	민 간	58	50 (△8)	44 (△6)	43 (△1)	35 (△8)	△23 (△39.7%)
	가 정	94	78 (△16)	77 (△1)	72 (△5)	66 (△6)	△28 (△29.8%)
	협 동	4	4 (-)	4 (-)	4 (-)	4 (-)	-
	직 장	9	12 (3)	14 (2)	15 (1)	17 (2)	8 (88.9%)
	방과후	7	3 (△4)	2 (△1)	2 (-)	2 (-)	△5 (△71.4%)

영유아 아동수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따라, 어린이집의 총 개소수도 2017년도 대비 26개소(△11%)가 감소하였음, 어린이집 유형별로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은 매년 감소추세로 각 28개소(△29.8%), 23개소(△39.7%)가 감소하고, 구립 어린이집은 28개소(56%)가 증가한 바, 공보육 영역이 21.5%에서 38.2%로 확대됨

[표3] 서울시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 마포구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전체 어린이집 수 : 205개소)

(2021. 2. 기준)

구 분	마포구 현 황	자치구 평 균	자치구 순 위	현황 분석
개 소 수	78개소	71개 소	12번째	마포구는 현재 공보육 여건을 판단하 는 기준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자치구 평균 44.0%보다 높은 52.9% 로, 공보육여건이 양호한 편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국공립 수 / 전체 수)	38.2%	33.0%	6번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국공립 현원 / 전체 현원)	52.9%	44.0%	3번째	

□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2021. 2.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전체 개소수	5,371	74	67	117	173	172	200	220	241	145	209	360	247
국공립	1,774	33	23	34	81	52	75	61	88	62	63	93	79
국공립 비율 (%)	33.0	44.6	34.3	29.1	46.8	30.2	37.5	27.7	36.5	42.8	30.1	25.8	32
구 분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전체 개소수	145	204	285	370	298	150	243	206	220	185	200	373	267
국공립	62	78	86	92	94	55	80	69	84	85	60	100	85
국공립 비율 (%)	42.8	38.2	30.2	24.9	31.5	36.7	32.9	33.5	38.2	45.9	30	26.8	31.8

[참고자료]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위탁계약 등)

-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구립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 모집)

-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다.

제22조(위탁기간)

- 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